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3 - 7호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3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비영리 법인의 설립을 통해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함(안 제3조)
- 나. 기념관 사업을 기념사업회 사업으로 개정함(안 제4조)
- 다. 기념사업회의 임원 및 조직, 사무기구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 안 제7조)

라. 기념사업회의 설립·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및 공유재산의 무상 임대외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5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032-440-6224, 팩스 032-440-8764, 이메일 thisman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25사변시 호국의 계기가 되었던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고 국민의 안보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설치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38(옥련동 525)에 둔다.

제3조(기념사업회 설립) ①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단법인 인천상륙작전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기념사업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기념사업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천상륙작전 관계 유물의 수집 및 전시
2. 인천상륙작전 기념 행사
3. 인천상륙작전 전쟁사 연구 활동
4.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홍보 사업
5. 그 밖에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임원) ①기념사업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를 둔다.

②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이사장)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되며,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사무기구) ①기념사업회는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기념사업회의 조직 및 운영,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기념사업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9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시장은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관 시설 전부를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2항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기념관의 관리 운영비에 충당하고 연도별 결산서를 다음해 1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시설등의 임의변경 금지) 기념사업회는 시장의 허가 없이는 기념관이나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지도·감독) ①시장은 기념사업회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운영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하는데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기념사업회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념관 및 그 부속물이나 전시물 등 관리를 위탁받은 재산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 ①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 면제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 등을 주최·주관하는 경우 : 면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천광역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서 공익목적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4. 공익목적을 위한 행사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00분의 30 경감
- ③제2항에 따라 수납된 사용료는 기념관의 관리 운영비에 충당하고 연도별 결산서를 다음해 1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시설 사용료(제13조 관련)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1. 시설사용료 ○ 영상관	가. 1 일 (09:00 ~ 22:00) 나. 오전 (09:00 ~ 12:00) 다. 오후 (13:00 ~ 18:00) 라. 야간 (18:00 ~ 22:00)	50,000원 15,000원 20,000원 20,000원	단, 법정공휴일은 주간만 가능
2. 냉 · 난방 ○ 영상관	1회(1시간)	20,000원	○ 매시간 초과 시마다 기준요금의 5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관계법령	☐ 민법 -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 제4조(설립허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설립허가 기준) ☐ 지방재정법 -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민 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②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중단 또는 완료 시 남은 재산 처리,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거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 기념사업회 인건비 및 기념관 관리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안 제8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재정지원) 규정에서 정한 기념사업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내용
- 연도별 인건비 및 기념관 운영비 집행 근거로 산출
- 단, 2013년의 경우 기념사업회 설립 시점인 3월 이후부터 산출

나. 추계 결과

- 2013년 : 542,000천원
 - 인건비(17명, 9개월) = 364,000천원
 - 일반운영비 및 공공요금(9개월) : 178,000천원
- 2014년 : 소요액 : 656,000천원
 - 인건비(17명) = 456,000천원
 - 일반운영비 및 공공요금 = 200,000천원
- 2015년 : 675,680천원
- 2016년 : 695,950천원
- 2017년 : 716,828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재정지원)에 의거 시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문화복지위원회 김기홍 의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계
세입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65,000
	소계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65,000
세출	인건비	364,000	456,000	469,680	483,770	498,283	2,271,733
	일반운영비 및 공공요금	158,000	150,000	156,000	162,180	168,545	794,725
	시설유지비	2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20,000
	소계	542,000	656,000	675,680	695,950	716,828	3,286,458
재원 조달		542,000	656,000	675,680	695,950	716,828	3,286,458
국 비							
시비	소 계	542,000	656,000	675,680	695,950	716,828	3,286,458
	일반회계	542,000	656,000	675,680	695,950	716,828	3,286,458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 교육 및 호국안보현장 탐방 등 교육사업비 지원 : 매년 5천만원(보훈처)